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 및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향토문화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적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적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문화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향토문화유적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 된다.

제8조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통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향토문화유적 지정) 향토문화유적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10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시장은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시장은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지정서 교부) ①시장은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문화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향토문화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면·동장(이·통장포함) 및 향토문화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보존 관리) 향토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문화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지정 사항 및 보호구역안의 금지행위등에 대한 경고판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적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점검) 시장은 향토문화유적을 수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 향토문화유적의 보존 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기록작성 보관) ①시장은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계도 등) ①시장은 향토문화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토문화유적 제 호

지 정 서

○ 명 칭 :

○ 소재지 :

○ 수 량 :

위를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	교 부 년 월 일	기 록 인

(변경대상)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	변 경 년 월 일	기 록 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적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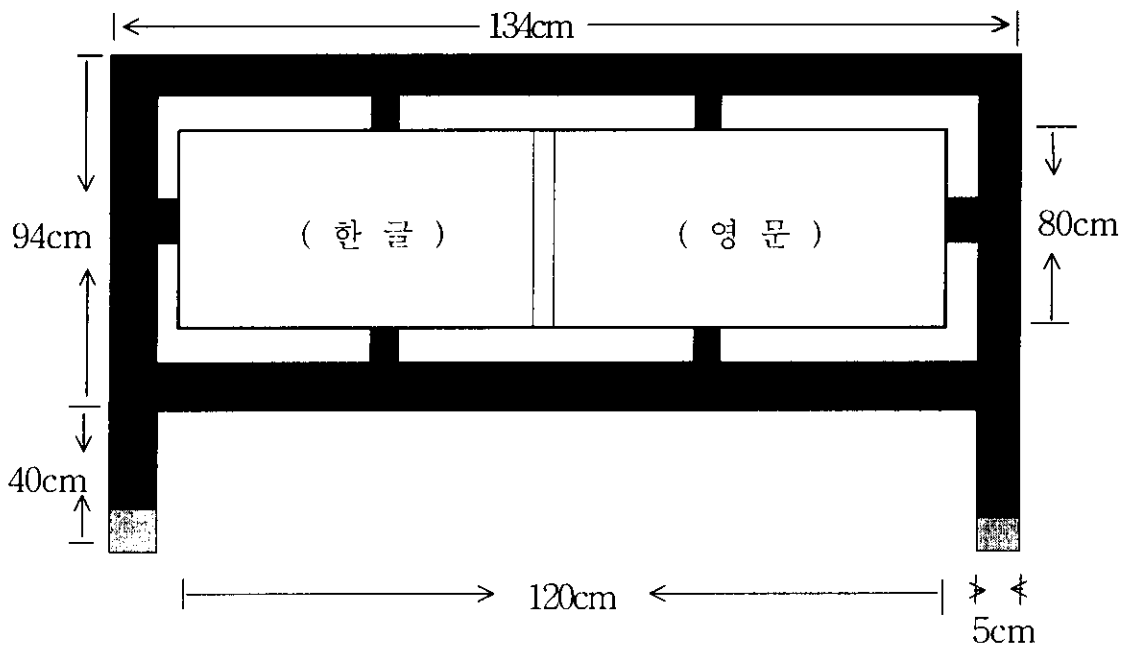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향 토 문 화 유 적 지 정 서 발 급 대 장

발급 번호	유적 명칭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수 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발 급 년월일	발급자인
						주 소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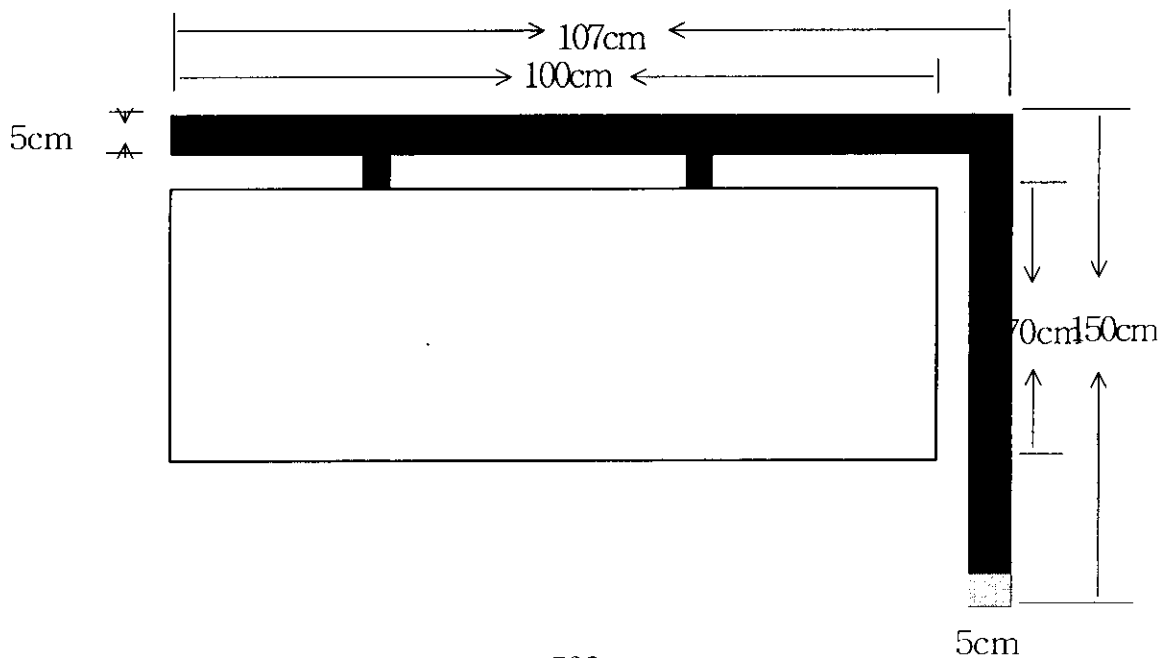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안내판(c형)



[별지 제4호서식]

경 고 판



[별지 제5호서식]

향 토 문 화 유 적 대 장

문화재 종별	등급	지정 번호	()										색인번호	
품 질	형식 또는 형태		구조	규격			작자							
지정년월일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발굴발견 년월일	발굴 장소		진설											
보호 시설물														
소재지역 및 보호 구역	지적	지목	지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보호 물	명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지정 사유														
연혁 (유래)				관리 사항										
년월일				년월일										

[illegible]